

보도	필요	·	불요
방법	자료제공, 특집 회견(설명)		
과장		국장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운입 33120-	전결 규정	4조 1항 전결사항
처리기간	85. 6.	시 장	
시행일자	85. 6.		
보존연한	년		

보 조 기 관	교통국장	전결	합 계 조	법무담당관	심사필
	운수1과장	12		예산담당관	YOM
	운수2과장	11		예산2과장	YOM
기안배임자		김제현	85. 6. (김윤철)	회계과장	YOM

경유	수신	참조	제 목	발	장	통	계
	가안참조		택시 미터기 개조검정 실시 공고	85. 6. 26			

운수 1과장 김제현
 운수 2과장 김제현

운수계수
 수신필수
 6월 26일

(제 1안) 내부결재

1. 택시 요금 개리시간 병산제 시행에 따른 택시 미터기 개조검정 실시 공고 (안) 을 다음과 같이 신문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가. 게재일 : 85. 6. 26
- 나. 게재지 : 공보관에 의뢰 (조건 1, 성준 1)
- 다. 소요 예산 : 754,160 원
- 라. 예산과목 : 교통관공비, 교통관공, 운수관미, 수용비 및 수수료
- 마. 지출방법 : 청구에 의거 지급

접수
 No. 1065
 26
 1985. 6. 26

(제 2안)	수신 공보관	461	발신 : 교통국장
--------	--------	-----	-----------

제목 신문 광고 의뢰

1. 택시 요금 기미시간 병산제 실시에 따른 택시미터기 값정 실시
공고의 신문 게재를 의뢰하오니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일 : 85. 6. 25.

나. 게재지 : 일간지 2개사 (조선1, 성간1)

다. 공고문 : 별첨

첨부 : 공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제1차	1985. 6. 24	제 183 호
관장자	법제국장	사무국장
	전경	

택시 요금 미터기 개조 검정 실시 공고

택시요금 ~~하락~~ ^{시간}거리 ^{비율}생산제 실시에 따라 지방법 시행규칙 제38조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택시 요금 미터기 개조 검정을 ^{각종} 실시함을 공고 합니다.

1985. 6. 20

서울특별시장

1. 검사대상 : 서울특별시 면허를 받은 영업용 일반택시
2. 검사기간 : 1985. 7. 1. - 3. 31.
3. 검사장소 : 서울특별시 공업시험소 검사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532-1)
4. 검정내용 : 회전 및 주행 검정
5. 기 타 :
 - 지정된 기간내에 검정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업시험소 (694-0053), 상공과 (731 - 6311-3), 운수1과 (735-7915, 732-8419) 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